

## 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직장에서의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를 징계감경 제한사유로 규정(안 제115조의2제2항제19호 신설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군인 징계령」 제20조제2항제19호의 징계감경 제한사유와 균형을 이루도록 해당 제한사유를 신설함

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

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 라. 입법효과

- 군내 갑질행위에 대한 엄정한 징계처분을 가능하게 함

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2.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를 구체화(안 제116조3제1항)

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조문의 요건을 상위 법령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변경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군인 징계령」상 피해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통보 안내의무의 요건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, 「군인사법」상 징계처분 결과통보의무의 요건을 인용하여 상호 일치시킴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#### 라. 입법효과

- 법령의 체계정합성을 향상시킴

#### 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### 3.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(안 제116조3제2항 신설)

#### 가. 제·개정 이유

- 「공무원 징계령」 제19조 제5항의 내용을 반영

#### 나. 제·개정 내용

- 피해자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는 경우, 국방부령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도록 명시

#### 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피해자에게 징계처분결과를 통지하는 방식을 명확히 함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

4. 군내 갑질행위의 행위태양을 구체화(안 제116조3제5항 신설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인 「군무원인사법」 제40조 제6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행위의 유형을 구체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「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(피해자가 개인인 경우로 한정)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
- 영 제115조의2제2항제1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군내 갑질행위로 규정

다.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갑질행위 피해자의 권익을 향상시킴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없음